

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 운영규정

제 정	2012. 07.
개 정	2018. 12.
개 정	2019. 03.
개 정	2019. 05.
개 정	2020. 02.
개 정	2020. 08.

제1조(명칭) 본 본부는 우송대학교 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라 칭한다.(개정 2018.12.18)

제2조(목적)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화된 학생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선된 학생복지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, 학생 각자의 능력개발과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. (개정 2018.12.18)

제3조(사업) 본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생상담(학생상담센터) : 개인·집단상담, 심리검사, 학생생활실태 조사연구 및 학부모 만족도 활용 정책개발 등
2. 취업지원업무(학생경력개발센터) :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조사, 개발, 운영, 점검 및 평가 등 (개정 2018.12.18)
3. 장애학생지원업무(장애학생지원센터) :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조사, 교수·학습지원, 상담지원, 편의시설 지원 등
4. 사회봉사단업무(사회봉사단) : 사회봉사단 운영,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
5. 창업지원단 :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조사, 개발, 운영, 점검 및 평가 등(개정 2019.05.08)
6. 기타 학생들의 자아성장, 심성개발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

제4조(시스템 운영) ①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학생의 동의를 득한 후 대학본부에서 학생경력개발센터로(본부) 제공할 수 있다.(개정 2019.03.14.)

② 원활한 학생관리를 위하여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본부가 총괄 관리하고 운영은 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하며 데이터를 학교 본부에 제공 한다.(개정 2020.08.25)

제5조(본부장) ① 본부는 본부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본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
제6조(직제) 본부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장이 되며, 위원은 각 센터의 센터장과 함께 교무위원

8인 내외로 구성한다.(개정 2020.2.17., 2020.08.25.)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부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2. 주요 사업 및 과제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 사항
4. 각 센터에서 제출한 연간 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심의 및 확정하고 환류의 통합관리 업무 수행 (개정 2020.2.17.)
5. 그 밖에 본부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자문위원) 본부의 사업기획 및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그 밖에 본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 「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 운영규정」으로 개정(확대 개편)됨에 따라 「학생생활코칭센터 운영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